

< 녹 취 전 문 >

| | | | |
|------|------------------------|------|-------------|
| 과제명 | 2021년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 | |
| 구술자명 |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 | |
| 면담자 | 신동호 | 면담장소 | 법무법인 민주 회의실 |
| 면담일시 | 2020. 8. 24. 14:30 | 회차 | 1회차 |

1. 퇴임 이후의 근황

신동호: 헌법재판소가 주관하는 2021년도 헌법재판소 주요 인사 구술채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님의 1차 구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님들의 과거 재판 경험과 헌법 철학을 생생한 육성과 동영상에 담아 헌법재판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 구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술 일시는 2021년 8월 24일 오후 2시 반, 구술 장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홍익대 강남관 건물 5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민주 회의실입니다. 면담자는 아카이브웍스 책임연구원 신동호입니다. 재판관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흡: 예, 반갑습니다.

신동호: 2012년 9월에 퇴임하셨죠. 퇴임하신 지 9년이 됐는데 그동안 변호사 업무 외에도 특별히 헌법재판과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지역 상담 활동에 재능기부로 참여하시고 2015년 7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2권째 책도 내셨고요.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퇴임 후의 활동과 관심사가 어떤 건지 그것부터 우선 들려주십시오.

이동흡: 예. 제가 2013년에 퇴임하고 한 2년 넘게 쉬다가 변호사 등록을 2015년 3월경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활동을 활발하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요새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부분은 그동안 판사로 근무할 때, 또 재판관으로 있을 때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하던 것 중에 인문학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문학 강좌 코스가 있어서 거기에 등록을 해서 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때 강사로 나오신 분이 방송통신대학의 김성곤 교수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재미있게 강의도 하시고 여행 자랑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선생님,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방송통신대에 등록을 하세요.” 이렇게 (웃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물으니)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그냥 되는 겁니다”라고 해서 말로만 듣던 방송통신대인데,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엄청나게 커리큘럼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판사로 있을 때도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도 상당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중어중문학과를 등록을 했습니다. 중어중문학과를 3년 다 마치고 또 그냥 졸업하기 좀 섭섭해서 복수전공으로 일본어학과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두 가지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로

젊은 사람들은 알찬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방송통신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잘 지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재판관 그만두고 좀 쉴 때 <헌법소송법> 책을 냈었는데 이거 개정판을 한 번 냈고 이번에 제3판으로 개정판 내는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로 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법원공보>라든지 <헌법재판소공보> 이런 걸 다 읽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요새는 시간도 많고, 책을 쓰기 위한 작업도 되고 해서 나오는 대로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동호: 원래 중국어와 일본어는 독학해서 익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어로 강의도 하셨고요.

이동흡: 그렇습니다. 중국어는 독학으로 했고요. 일본어는 일본문화원에 3년을 졸업하고 해서... 그런데 제가 그때 공부한 것보다 지금 방통대 들어와서 공부해 보니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수준도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신동호: 그리고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리시게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변론을 하셨고 지금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변론 중이지 않습니까. 변론은 이제 끝났죠. 탄핵 심판 변론 통해서 제도와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와 느낀 점이 많으실 텐데요. 현직에 계셨으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이동흡: 예,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대통령 탄핵 사건의 대리인, 또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의 피청구인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걸 겪어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고, 그중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잘 아시다시피 재판부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결원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걸 상당히 느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공정하게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이번에 임성근 판사 탄핵 사건은 현 재판부에서 아주 공정하게 절차 진행을 잘해 주고 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호: 둘 다 역사적 사건인데, 그런 걸 직접 재판을 통해서 다루거나 변론을 통해서 경험하시게 되면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요.

이동흡: 그렇습니다. (웃음)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아무도 나서서 변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심지어 이번에 임 판사 경우에도 그런 성향이 처음에 좀 보이고 했는데, 그럴 때 나라도 나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심정으로 대리인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신동호: 요즘 건강은 어떠시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특별히 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동흡: 건강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공부하는 것 말고는 골프 치고 이런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골프도 자주 치고, 등산을 해야 하는데 등산 파트너가 지금 없어지고 해서 등산은 못 하고 부족하나마 골프로 운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2. 집안 환경과 법조계 입문

신동호: 과거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대구 출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고향은 경북 청도군요.

이동흡: 아버님 고향이 경북 청도고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신동호: 아, 태어나시길 대구에서... 집안 환경이나 성장기 또는 학창 시절 특별한 경험들이 사람마다 각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법조인의 길을 가게 될 좌표 같은 사건이나 경험,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었습니까?

이동흡: 특별한 경험이나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아버님이 공무원으로 계셨고, 중산층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런지 잘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조금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던 그 시절은 공부 잘하면 판사가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네가 커서 판사가 돼라, 어른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 나도 그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신동호: 대구국민학교, 능인중학교, 경북고, 이렇게...

이동흡: 그렇습니다.

신동호: 그러니까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거의 보내셨군요.

이동흡: 그렇죠. 고등학교까지는 완전히 대구에서만 있었고요. 대학부터 출타를 한 거죠.

신동호: 재판관님의 삶이나 인생관,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 집안 어른이나 스승, 지인이 있는지, 그리고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요.

이동흡: 제가 법조인 선배 중에 특별하게... 어릴 때부터 특별한 인연으로 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가르침을 받은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김용철 전 대법원장님은 저희 은사님의 동생이시고 해서 어릴 때부터 인사도 드리고 또 나이 들어서도 철 맞춰

인사도 드리고 좋은 말씀도 듣고 이렇게 쪽 몇 십 년을... 그런데 지금 김 대법원 장님이 아주 연로하셔서 건강이 어려워져서 그게 좀 안타까운 그런 관계고요. 또 조규광 (전 헌법재판소) 소장님은 제가 현재 연구부장으로 와서 그때 처음 모시게 됐는데, 조규광 소장님도 그 이후로 몇 십 년 동안 늘 찾아뵙고 말씀 듣고 했습니다. 조 소장님에 대해서 기억 나는 게, 그 당시에는 현재 연구부장이 소장님을 직접 보좌하니까 결정문, 소수의견을 내시는 걸 도와드렸어요. 소장님 본인이 직접 초를 잡으셔서 방향을 제시했는데, 제가 결정문을 올리니까 그것을 열 번인가 스무 번을 고치고 다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조 소장님도 아주 철두철미한 성품이시고 지식도 워낙 해박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제가 나중에 재판관이 돼서 사형제 결정문을 주심으로 쓰게 됐어요. 그때 담당하던 연구관이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스물 몇 번을 고쳤대요. (웃음) 그게 한 번에 눈에 보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규광 소장한테 배워서 나중에 연구관들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연구관들은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해요. (웃음)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또 한 분 법조 선배 중에 (가르침을 받은 분은) 이시윤 전 재판관님이십니다. 대학 다닐 때 민사소송법은사이시기도 하고 대학원 때 석사학위 지도교수이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 이후에도 쪽 가깝게 모시고 인사도 드리고 만나 뵙는데, 지난번 건강을 크게 다치셨죠.

3. 법관으로서의 철학

신동호: 재판님께서 68학번이시죠. 졸업하시고 바로 사법시험이 되셔서 법조계에...

이동흡: 졸업하고 1년 만에 됐죠.

신동호: 헌법재판관 재직 시기를 포함해서 한 30년 넘게, 34년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법관으로 봉직을 하셨는데 사법철학이라고 할까, 어떤 걸 갖고 계셨는지, 지금 후배 법관들한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신지요.

이동흡: 저희도 사회 경험 없이 대학 졸업하고 시험 공부해서 바로 임관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몇 십 년을 지냈는데, 판사로 있으면서는 선배 법관들, 부장판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 재판은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는 걸 다 익혔죠.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 법조 역사에서 선배님들이 좋은 전통들을 많이 쌓으셨더라고요. 그게 대를 이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뒤에 제가 부장판사가 되고 책임을 지고 재판할 때는 역시 재판은 당사자들이 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사정을 잘 경청을 하는 게 가장 요체 중의 하나 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대강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 준비도 하고 또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하는 것이 판사의 본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 후배 법관님들도 다 그런 생

각을 갖고 하시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동호: 좌우명이 제가 어디 보니까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요. 맞는다면 그 좌우명을 갖게 된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지요.

이동흡: 예, 현재 재판관이 되고 좌우명을 적어달라고 해서 그때 생각해 봤던 건데요. 화이부동이라는 것은 논어에 나오는 글인 줄 압니다. 군자(君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小人)은 동이불화(同而不和)다, 거기서 나온 화이부동인데 다른 사람과 생각을 똑같이 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낸다, 바꾸어 말하면 화합을 하되 부화뇌동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의 화이부동이 재판관으로서 가지기에 좋은 좌우명이 아니냐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 할 때도 여러 사람이 하나까 따라간다, 이렇게는 하지 않고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이 옳다 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소수의견이라도 소신 판결을 하는 그런 것이 화이부동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동호: 그래서 그런지 재판관님 보니까 다수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별개의견이라고 해서 많이...

이동흡: 보충의견이죠. 보충의견, 예.

4. 보수의 가치와 원칙

신동호: 그다음에 재판관님께서 보수적 가치관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런 성향의 판결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사건에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린 윌리엄 렌퀴스트(William Rehnquist) 미국 제16대 연방 대법원장을 존경한다고 하셨습니다. 법관으로서 보수의 덕목으로 진보적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동흡: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런 개념 정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을 유지하는 걸 중시하는 것을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변화할 때 변화할 필요가 있는 건데 보수가 별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수적인 판결을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데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그쪽으로 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켜야 할 건 또 지켜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이 보수적이다, 아니면 이런이런 의견 내는 게 진보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판사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의견 낸 거라든지 재판관으로 있을 때도 소위 진보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낸 의견에 동참한 케이스도 상당히 있거든요.

신동호: 예, 그렇더라고요.

이동흡: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당연히 이 결정이 옳다고 해서 했지,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이쪽으로 가야 하니까 간다, 그런 나눔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으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신동호: 그러니까 보수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재판관님은 남들이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점이 있는 거죠?

이동흡: 무슨 사건을, 이렇게 하는 거는 보수 성향이고 이렇게 하는 건 진보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거죠. 자기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리 갈 수 있는 거고 저리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신동호: 200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계실 때 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진 신호순, 심미선 양 가족이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이 보유한 미군 수사 기록을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해서 당시 진보 단체로부터도 크게 환영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당시의 상황과 판결, 방금 말씀하신 보수 진보로 사람들이 재단해버리는 것과는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 기억나시거나 특별히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이동흡: 이 사건은 워낙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그런 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나는 그 당시에 이런 걸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신동호: 크게 고민할 것 없이...

이동흡: 그렇죠.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 판결한 건데, 저를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치니까 이걸 이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5. 주요 사건과 판결

신동호: 법관으로 계실 때 주요 사건 판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재판관님께서서는 헌법재판 외에도 공정거래와 지적재산권, 조세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전담부 재판장으로 지내면서 공정위 결정을 여러 차례 파기해서 공정위의 결정도 엄연히 재판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세웠고요. 2003년 12월 공정위가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물린 1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대부분 취소한 판결, 이거는 그때 상당히 보도도 많이 되고 세상에 화제가 됐는데요.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면서 겪었던 일이나 느낀 점, 이

런 걸 좀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

이동흡: 제가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장을 하면서 운 좋게 지적재산권 전담부도 한 3년, 공정거래 전담부도 한 2년, 이렇게 맡아서 재판했어요. 또 조세 분야는 제가 1985년에 미국 조지타운대학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시윤 교수님께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분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이 판사, 미국 가면 미국은 다 판례법이고 한테 실정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세법이다. 그러니까 세법은 법 조문이 미리 다 돼 있는 거니까 그걸 공부하면 공부하기도 쉽고 우리한테 돌아와서도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법원 가기 직전이니까 우리나라 세법도 공부를 안 했어요. 고등법원 판사가 돼야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가다 보니까 미국 가서 세법을 주로 수강을 하게 된 거지요. 그때 세법하고 헌법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수강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 세법을 먼저 공부하고 돌아와서 고등법원에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세법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세법 전문가라는 평도 받았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부에 있으면서 제가 일본 고등법원 판사들과 교류 관계가 있어서 일본 지재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적재산권연구회라는 게 처음 생겨서 제가 초대 회장을 했는데요. 그때 판사님들 전부 한 10명 가까이 갔던 것 같은데, 일본 고등법원 지재부 판사님들과 공동 세미나를 하고 그랬어요. 아주 그때 좋은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판사들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상당히 관심 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정거래 부분은 처음으로 고등 재판장이 돼서 접하게 됐는데, 이건 전혀 공부한 바가 없었던 분야였어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자본주의 안전판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때 생겨나서 세계적으로 퍼져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일본 책도 구해서 읽어보고 미국 책도 보면서 공정거래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할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 무슨 이슈가 있어 재판이 미루어지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걸 맡아서 사건 처리하다 보니까 삼성 사건도 생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공정거래 사건을 많이 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연 초청을 했어요. 법리적으로 큰 법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해서 가서 강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신동호: 그다음에 여쭙불 사건도 그런데요. 2003년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엑스존을 청소년 유해물로 볼 경우 헌법상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변호인단의 증인 신문 요청이 채택됐고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진지하게 경청을 해서, 판결에 관계 없이 법원이 동성애 문제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점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이동흡: 예, 기억은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게 뭐가 문제다, 뭐가 억울한지 이런 부분은 경청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신문도 진지하게 했다고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건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교계에서는 무조건 억누르고 인정 안 하고 이러는데,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동성 간 결혼도 허용하는 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문을 좀 열어놓고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동호: 그때 재판 당사자들이 신문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재판 과정이 참 좋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혹시 뭐라고 비판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이동흡: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신동호: 그다음에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등기를 하지 않아 시가의 30% 과징금을 징수당한 고등학교 교사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데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가장 많이 제청한 법관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미국 가서도 미국 헌법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동흡: 예, 그렇습니다.

신동호: 관련해서 논문을 그쪽으로 썼는데...

이동흡: 아닙니다. 논문은 세법 관계를 했고요. 그때 하여간 세법이 아닌 걸로 수강도 좀 해 봐야 되니까 우연히 헌법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했습니다.

신동호: 헌법과 관련해서 위헌제청신청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헌법소원도 많이 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동흡: 예, 직권으로도 하고 그랬죠. 국가배상법은 직권으로 해가지고 그게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원고가 엄청 억울한데 도저히 법률로는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신동호: 아, 예.

이동흡: 그래서 이걸 법률 해석으로는 구체적 타당성을 구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법률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위헌제청을 해서 위헌 선언을 함으로써... 안 그러면 그 원고는 승소할 수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제

가 나중에 보니까 다섯 건을 위헌제청을 했는데 그중에 두 건이 위헌 선언이 되고 나머지 위헌 선언이 안 된 사건들도 소수의견에서 위헌 의견이 나와서 나중에 법을 고치는 데 영향을 줬더라고요. 항소심의 구속 기간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법을 고치는 데 영향을 다 주었다고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위헌제청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동호: 판사님들이 위헌 제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게...

이동흡: 많이 있지는 않지만 나는 다행히 그런 케이스가 걸린 거죠. 그러나 그걸 유심한 시각으로 봐야만 보이니까. 어떡하든지 판사님들이 재판하시면서 그런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법률 해석으로 도저히 안 된다면 법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위헌제청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6. 법원행정과 사법제도

신동호: 재판관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재판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이나 사법제도 부분에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1993년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을 하였고 2005년 수원지방법원장 시절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법제도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경험도 하시고 문제점도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그때 경험을 통해서 사법 발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데요.

이동흡: 처음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위원 될 때 저는 연수원 교수, 지방 부장판사 잠깐 한 정도의 경력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대법원에서 저를 그렇게 위원으로 뽑아주셨는지 감사한데, 그때 제가 외국 선진 제도들하고 우리 제도의 차이가 뭐냐, 이런 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얘기도 하고 했던 것이 그런 위원으로 뽑힌 계기가 됐지 않을까 저 혼자 추측을 해봅니다. 그 뒤에 또 수원법원장 시절에 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했을 때는 소위 로스쿨이 도입되고 그럴 때죠. 그때도 저는 미국 유학 경험을 살려서 미국의 로스쿨 제도가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도입할 만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찬성을 했는데, 그때 딱 하나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일본도 우리보다 한 3, 4년 앞서서 로스쿨을 도입했는데 일본은 사법시험 제도를 로스쿨 제도로 바꾸면서도 사법시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전판으로 열어놨다더라고요. 예비시험인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내놓는 게 더 좋지 않느냐고 그 당시 위원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냈었는데 다수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즉 현재 제도로 왔는데, 요새도 사법시험 폐지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로스쿨의 문제점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보면 과연 그때 그렇게 다 막았던 게 옳은 건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신동호: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 보이네요.

이동흡: 예, 예.

신동호: 서울가정법원장 시절에 이혼숙려제를 도입한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재판관님이 도입해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도 됐고요. 또 성과를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도 제가 봤는데 이혼숙려제를 생각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이동흡: 이것도 세월이 오래돼서 내가 (웃음) 처음에 계기가 뭐였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요. 틀림없이 외국 제도에서 힌트를 얻었지 않나 추측은 되는데요. 그런데 그걸 제가 가정법원 법원장 시절에 시작해서 수원법원장 가서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걸 좀 신중하게 하고 또 이혼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도 다 갖추고... 막 그냥 감정으로 빨리 이혼해 버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으니까. 신중하고 건강한 그런 이혼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고, 숙려제를 시행한 뒤에 취하율이 그 뒤에 보니까 한 다섯 배 상승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전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신동호: 예. 수원법원장 시절에 인신구속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섯 가지 구속 요건 판단 기준을 정하고 공개를 했고요. 법원장으로서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일하는 법원장’의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시다. 수원지방법원이 굉장히 큰 법원이 아니겠습니까. 법원을 운영하면서 그때 했던 경험이나 일화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동흡: 좌우간 민사재판에 있어서 심리 충실화라든지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 그런 것은 보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많이 정착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법원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 이런 부분을 현장에도 가서 보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때 잘 아는 일본 판사를 초청해 강연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기억나는 것 중에 수원법원장 시절에 판사님들하고 아침에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일부 판사지만 한 열 명 이렇게 스터디그룹처럼 해서 영어로 된 공정거래법 책자 그걸로 강독회를 쭉 했습니다. 판사님들한테 상당히 좋은 동기 부여 같은 게 됐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 뒤에 젊은 판사로부터 그걸 인연으로 해서 미국 유학도 가게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신동호: 재판관님께서도 지방법원 재판장 시절부터 구두변론에 주목하시고 관련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요.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도 ‘변론주의에 관한 일고찰’이잖아요.

이동흡: 그렇습니다.

신동호: 우리나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두변론 실상과 개선점에 대해서 특별히 들려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동흡: 예. 우리 선배님들은 법정에서 변론이라 하면 준비서면 내고 며칠 자 준비서면 진술, 이러면 그게 구두변론이었습니다. 몇 십 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판사도 서면을 보고 나중에 결심하면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고 했는데, 재판이 돌아가는 도중에는 쟁점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도 우리보다 일찍이 마찬가지로 원래는 며칠 자 준비서면 진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준비서면의 요체를 구두로 (직접 진술하게 됐지요), 서로 입을 맞대고 주장 공방을 하는 게 구두변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구두변론을 통해서 사건의 쟁점이 드러나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 들어갈 때 미리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구두변론에 관해서는 제가 미국과 우리를 비교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1985년 미국에 유학 갔는데 그때 워싱턴DC 조지타운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방청이 가능했습니다. 교수님이 어레인지(arrange)를 해줘서 거기서 변론 과정을 직접 방청을 했습니다. 그 때 봤더니 그 당시 이미 미국은 한 사건당 한 시간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요. 그 걸 절반 잘라서 받은 원고 측, 또 받은 피고 측에서 변론을 하고 당사자, 대리인이 변론하고 나면 아마 나머지 30분 안에 그 시간 동안 재판부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재판관이 돼서 미국 연방대법원을 방문해서 구두변론을 하는 것 보니까 30분은 30분인데 원고 대리인이 변론하는 도중에 잘라서 재판관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이 재판관이 묻고 저 재판관이... 막 이렇게 하고 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또 하던 변론을 이어가고, 그렇게 해서 무조건 30분 내에 하는데 다만 그렇게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중간에 끼어들어 변론을 자르고 묻고 답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 기회에 DC 항소법원 재판도 방청했습니다. 그때 재판부도 만나서 인터뷰도 했는데 항소법원은 보니까 한 사건 당 8분, 12분 이렇게 변론 시간을 딱 미리 정해줘요. 그 시간에만 변론할 수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변론 중간에 잘라서 묻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항소법원 판사한테 “대법원도 저렇게 하더니 여기도 그렇게 하네요.” 이랬더니 그 판사 말이 “원래 항소법원의 구두변론 관행이 대법원으로 수출이 된 거다”, (웃음) 왜냐하면 DC 항소법원 판사들이 대법관이 대부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C 항소법원 재판관의 60%가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 관행이 바뀌었다는 건데, 그럼 우리 현재는 어떠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사자 대리인 변론을 다 하고 재판부에서 그 뒤에 물어보고 이런 건 하지만, 구두변론 시간 중에 아주 많은 시간을 참고인 진술에 할당하고 참고인이 진술하고 재판부가 참고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계로 나아가는 헌법재판> 책자에도 다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왜 이렇게 다르네요”라고 했더니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대리인으로 나오는데 대리인이 법리적인 것 주장하고 답하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참고인이 주가 되도록 하느냐, 참고인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의견서를 내면 되는 거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동호: 그러니까 아까 시간을 정해 준다는 건 예를 들어서 변론 시간을 8분 준다고 하면 중간에 재판부에서 질문하고 이런 거를,

이동흡: 포함해서.

신동호: 아, 그걸 포함해서요?

이동흡: 예, 그럼요. 그리고 이게 딱 이렇게 경고등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오면 경고등이 켜지고 (마이크가) 다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전혀 말이 안 돼요.

신동호: 시간 지나서 말한 것은 채택이 안 됩니까.

이동흡: 채택뿐만 아니고 듣기지도 않는 거죠. 철저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법원도 그렇고 항소법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합쳐서 그렇게 하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죠. 대리인들이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주장할 것도 조리 있게 다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신동호: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법원의 재판 절차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공판 검사가 자리에 앉아서 신문서를 읽던 것을 일어서서 하게끔 했다는 일화도 있던데요.

이동흡: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엄청 항의랄까 불만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100% 공소장 낭독할 때뿐만 아니라 변론할 때도 반드시 앉아 있다가 서서 합니다.

신동호: 예, 그렇습니까.

이동흡: 반드시 100%.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확 드러나니까 집중도 되고요. 그냥 여러 사람이 하면 누가 말하는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변론을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 기립해서 하는 걸로 했어요. 그게 뭐 어려운 것 같지 않는데 종전 관행과 좀 다른 걸 하면 싫어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동호: 워낙 일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회식 자리에서 “내가 병커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이동흡: (웃음) 그러니까 저는 배울 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엄하게 하면 그게 분명히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렵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회식 자리에서 골프 칠 때 벙커는 기술만 있으면 그냥 나올 수 있는데 기술 없는 사람이...

신동호: 기술 있으면 탈출해라... (함께 웃음)

이동흡: 아무래도 좀 힘들게 느끼는 분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신동호: 그게 나중에 자기의 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삼는 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의기소침해지고 꺾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이동흡: 그렇시다. 예.

7.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마음가짐

신동호: 계속하겠습니다. 2006년 8월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지명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헌법하고는 굉장히 인연도 많으시고 그쪽으로 공부도 많이 하셨고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제청 이런 것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데다가 1992년도에 헌법연구부장으로 가서 헌법재판소 초기에 기틀을 잡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라는 논문도 내셨고 헌법재판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시고 애정도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 차에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을 때 어떠셨는지 소감이랄까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흡: 저희들이 고시 공부할 때 헌법 과목을 공부하고 실제 재판에서는 헌법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을 못한 채 한 10년 지냈습니다. 그랬다가 미국 유학 갔을 때 헌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좀 인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꼭 관심도 가지게 됐고, 나중에 재판장이 돼서 재판을 할 때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서는 이 법 조문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뭔가 법률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냐, 이런 경우에 위헌제청을 하는 걸 통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획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는 워낙 세상이 바뀌어서 판사들이 헌법재판소가 생긴 지 이제 벌써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다 알고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다 재판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동호: 그 당시에는 헌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판사님들이 별로 없었죠?

이동흡: 없었죠. 예.

신동호: 그러니까 헌법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필드에서도 헌법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적용하고 그러시려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법관 시절에도 평소에 헌법재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네요.

이동흡: 아니 그러니까 미국 유학 갔다 와서죠. 그 뒤로부터 관심을 좀 갖게 됐다 이런 거죠.

신동호: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바라던 바였겠네요.

이동흡: 뭐, 내가 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예. (웃음)

8. 헌법재판관 재임 중에 다루었던 주요 사건 및 재판 과정에 대한 회고

신동호: 헌법재판관 재임 중에 다루었던 주요 사건과 재판 과정에 대해서 회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재판관님께서 재임 중 다룬 사건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시는 주요 사건과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나 결정문에 기록돼 있지만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사실적 혹은 철학적 배경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그런 결정 이후에 후일담이 있으면 함께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재판관님의 사법철학이나 헌법철학도 거기에 또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한 한정위헌을 결정한 GS칼텍스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 아닙니까. 헌법재판의 권능을 확인시킨 결정이지만 한편으로는 대법원과의 갈등을 증폭시킨 결정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큰 논란과 과장이 따르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당시 주심으로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이끌어내신 걸로 압니다. 이 사건을 좀 회고해 주시고 한정위헌과 재판소원에 대한 헌법적 의미, 그리고 재판관님의 견해 이런 걸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동흡: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한정위헌 사건은 (자료를 살펴봄) 이게 부칙 조항이 있었는데 전면개정이 됐습니다. 전부개정법이 시행됐는데 이게 입법 실수로 부칙에 있던 것도 그럼 전부개정법에다가 관계되는 걸 규정해야 되는데 규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게 실효된 걸로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통해서 과세 근거 규정이 다시 살아난 것은 일종의 입법 행위다, 그것은 권력분립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해석으로 그걸 규제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서 한정위헌 결정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체가 다 동의하셨습니다.

신동호: 견해가 달랐다가 나중에 합의가 되신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

이동흡: 처음부터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명백하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그 이후에 여기에 다른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거냐 말 거냐, 그 사건은 아직도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헌법 위반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건 헌법 위반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능 중에 하나고, 해석이 잘못된 것은 그 해석으로 인해서 헌법 위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헌재가 나서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헌법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한 사실 관계 인정 문제라든지 단순한 법률 해석 적용 문제 이런 것은 재판 관할 사항이니까 재판소원 금지에서 인정 안 하는 거고 이런 헌법 문제에 관계된 해석 문제는 한정위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다수 재판관님들의 의견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신동호: 그다음에 심리불속행 사건에 대한 건데요. 심리불속행 사건은 4기 재판부에서만도 여러 차례 다루어졌더라고요.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해서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위헌 소원인데 이게 다 기각됐습니다. 재판관님은 기각 결정을 내린 다수의견과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별도로 보충의견을 또 내셨죠.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의 성질상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 판결로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이동흡: 예, 이것은 아시다시피 상고심 특례법에 대한 것인데, 대법원에 사건이 지나치게 많이 몰려오니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판단을 다 적고는 도저히 재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심리불속행 건수가 요새는 몇 %인가 잘 모르겠네요. 70%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유를 적는 것은 심리속행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적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심리속행 사유에 몇 개 나열된 게 있는데 그 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를 적더라도 그것밖에 적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생략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입법 재량상 가능하긴 한데, 다만 이것은 판결로 하기보다 그냥 결정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사유가 없다, 이 말만 결정으로 해야지 이걸 판결로 하면서 이유를 생략하게 하는 것은 재판 청구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소수의견이 주장하듯이 판결 이유 기재에 판단 누락이 있으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재심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정도는 적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재판 제도상 이걸 다 위헌으로 하긴 어렵지만 원래 법률을 만들 때, 일본은 결정으로 상고 기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고 속행 사유가 안 되는 것은 결정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판결로 하면서 이유를 생략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보충의견으로 했습니다마는 엄격히 말하면 헌법불합치를...(선언하는 게 맞죠). 이유를 안 써도 좋은데 결정으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냐는 겁니다. 보니까 이시윤 교수님 같은 분도 교과서에서 제 보충의견을 인용하면서

당연히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할 것을 계속 법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 들으니까 원래 대법원 안은 결정으로 하는 걸로 올렸는데, 국회의원들이 고집을 부려서 판결로 하는 것이라야 법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도 있어요.

신동호: 입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건 무슨 이득이 있어서죠?

이동흡: 그래도 상고 안 받아주면서 판결했다 이렇게 해야지 결정이라는 거는 비공개로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서시오라리(Certiorari), 이런 것처럼 상고 허가 비슷한 것이거든요. 원래 그걸로 칠 것 같으면 그냥 결정으로 기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동호: 이 사안은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동흡: 예,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대법원이 운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사유가 안 될 때는 심리불속행을 하되 그것을 결정으로 할 거냐 판결로 할 거냐, 그 문제죠.

신동호: 예,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부분인데요. 재판관님께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야간 옥외집회 사건, 미네르바 사건, SNS 선거운동 사건, 서울광장 차벽 봉쇄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서 일관되게 합헌의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음란표현 기본권성 확인 사건에서도 별개의견을 통해서 기존 판례 변경에 대해서 반대하셨고요. 그렇지만 인터넷 실명제 사건에서는 전원일치 위헌 결정에 동참하셨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꾸 확대, 강화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근 미디어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폐해와 갈등도 커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앞으로 헌법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동흡: 예, 하나하나 제가 왜 그런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만 하면요. 야간 옥외집회 사건은 법률로 집회를 야간에 제한하는 것 때문에 사전 허가 금지 조항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법리고요. 그런데 심야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니냐, 그게 5 대 2 대 2인가 이렇게 해서 헌법불합치가 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률로 제한한 것은 사전 허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확실한 법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건 그렇고 다만 심야 부분, 이것은 입법례에 따라서 11시,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해가 지면 못하게 하는 건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종전에 8 대 1로 합헌 결정이 났었어요. 종전에 8 대 1로 합헌 결정이 났는데 종전 의견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이걸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

나치다 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사전 허가 금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막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서 그렇게 제가 합헌 의견을 냈고요. 그 뒤에도 5기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은 한정위헌으로 그렇게 했죠. 그때 12시로 했던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네르바 사건, 이 부분도 전기통신 설비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이것은 보통의 허위사실과 달라서 그 파급력이 월등 막강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 전부 다 (전과)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도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습니다. 가짜뉴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SNS 선거 운동 사건, 이 부분도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인터넷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은 조직 동원력이라든지 경제력에 대한 불균형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허위 비방 과대 선전으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1년 12월에 선고됐는데 바로 2년 전에 합헌 결정이 났었습니다. 우리 재판부에서. 같은 재판부에서 2년 만에 주문을 바꿨어요. 그중에 한 분은 왜 의견을 바꿨는지 이유도 대지 않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선거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죠. 그다음에 서울광장 차벽 봉쇄 사건도 이쪽저쪽 의견이 다 가능하겠습니까만, 그때 차벽 우회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 혼란 가능성 등으로 볼 때 차벽을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 지금도 보니까 다 차벽을 하고 있더구먼요. 그러니까 나는 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합헌 의견 냈다고 해서 완전히 보수적이라거나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음란 표현 기본권 부분도요, 전 세계 선진국 판례에 언론 자유의 보호 영역 밖이라고 다 법리적으로 확립돼 있습니다. 미국의 옵시너티(obsenity), 독일의 하드코어 포르노(hardcore pornography),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음란 표현은, 보통 음란이라는 개념이 얼마간 차이가 있기는 있는 거죠, 이걸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정말 말도 못 하는 음란, 그런 것은 영역 밖이라는 것이 세계적 법리로 확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음란해도 보호 영역 밖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위헌을 한 건데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쌍방 간에 다 가치가 있는 의견이죠. 그런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너무 풀어버리면 그로 인한 폐해,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잘 결정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신동호: 표현의 자유 문제는 언제나 참 뜨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죠.

이동흡: 예, 예.

신동호: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낙태죄 사건, 또 간통죄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의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뒤에 재판관

님 의견대로 판례가 변경됐죠. 둘 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안이고 종교계와 여성계는 물론 보수, 진보 진영 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관님께서서는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와는 다르게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요.

이동흡: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보수니까 어느 쪽으로 가고 진보면 어느 쪽으로 가고, 그 부분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아무튼 낙태죄는 세계적 이슈로 근 100년 논쟁도 하고 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리가 잡힌 부분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뒤떨어져 있다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위헌 의견을 냈을 거고, 간통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통죄가 인정된 나라가 전 세계 한 두 개, 뭐 이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꼭 진보, 보수 문제는 아니고 저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동호: 낙태죄 같은 경우는 종교계나 여성계와도 굉장히 부딪치는 문제죠.

이동흡: 그렇습니다.

신동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서요. 낙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보수냐 진보냐...

이동흡: 그렇다고 그러데요. (웃음) 낙태죄는 그렇죠. 그러나 그냥 낙태를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번에도 현재 판례가 나왔습니다만 기준을 다 세웠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다는 거죠.

신동호: 그다음 정보인권에 관한 문제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보장권, 이른바 정보인권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채무 불이행자 등재 제도 위헌 확인 사건이 가장 치열했던 정보인권 헌법소송으로 꼽힙니다. 당시 4 대 5로 인용 의견, 위헌이죠. 위헌이 더 많았는데 위헌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재판관님께서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사익보다 제도의 공익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서 합헌 쪽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결정의 이유에 대해 좀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지, 또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릴 때 평의를 통해서 결정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동흡: 평의를 통해 결정이 뒤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죠?

신동호: 팽팽했는데 이게 서로 법리 논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동흡: 예, 예.

신동호: 그런데 평의 과정에서 어떤 분이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의견이 바뀌어서 결정이 변경되는 때도 있는지요.

이동흡: 아, 논쟁할 때는 이쪽 편에 섰다가...

신동호: 논쟁 과정에서 설득이 되는 거죠.

이동흡: 설득이 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법의 입법 취지, 즉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과 그다음에 침해최소성 문제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위헌 의견은 경제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소명한 자만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는데, 열람복사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과 제한을 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 즉 이 명부에 이런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불이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정도 관련이 있음을 소명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나 그 주체 제한 안 둔 것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용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신동호: 예, 예. 그다음에 또 눈길을 끄는 사건이 자필 증서 유언에 주소를 자서하도록 한 민법 조항, 민법 제1066조 제1항인데 여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4 대 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관님께서는 반대의견, 위헌 의견을 내셨죠. 자필 증서 유언의 요건으로 주소의 자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특별히 없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재판관님 의견이 관철이 안 된 것이 아쉽지 않았습니까.

이동흡: (웃음) 솔직한 말로 위헌 의견 잘 내시던 재판관님들이 왜 이 당연한 것에는 위헌 의견을 안 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입법례하고 비교해 봐도 그렇고 거기에 주소 (자서가) 안 돼서 그 사람이 유언자가 아닌지 밝히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

신동호: 왜 이렇게 됐는지...

이동흡: 그런데 보통 이런 정도로 해서 합헌이 나면 그다음에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돼 위헌 의견으로 바뀌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그 뒤에 이것은 사건이 안 나온 모양이죠.

신동호: 네. 그다음에 변리사 소송 대리권 제한 사건은 변호사와 변리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져서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변리사는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변리사법 제8조를 근거로 변리사가 특히 관련 각종 민사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

라는 거였죠.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재판관님께서 유일하게 보충의견을 통해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입법적 조치를 권고하셨습니다. 법관 시절 직접 재판을 해본 경험에서 나온 견해인지요?

이동흡: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재산권부에서 근무를 해 봤고 또 일본 지재부를 방문해서 재판도 방청도 해본 그런 경험이 조금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밥그릇 싸움인 것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변리사가 소송 대리까지 하게 되면 변호사한테 돌아오는 몫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특히 침해 사건과 일반 특허 기술적인 것은 다르다는 논쟁도 가능한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공동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걸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변리사의 전문성, 아무래도 기술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보다는 변리사가 더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재판부에 설명을 하고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재판 신속이라든지 충실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일본에서 공동소송을... 다만 변리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험도 쳐야 하고 조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거친 다음에 변호사가 변리사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좀 다르게 돼 있는 거죠.

신동호: 그때 변호사협회나 이런 쪽에서 그러면 의료분쟁은 의사가 공동대리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편 것 같은데...

이동흡: 그렇죠. 그런데 특허나 뭐 이런 데 대해서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웃음)

신동호: 그다음에 보건범죄 단속법 양벌 규정 사건과 청소년 보호법 양벌 규정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위헌 결정이 났는데요. 재판관님은 둘 다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조항이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건은 위헌 주문에 대한 이유에서도 재판관 사이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재판관님의 반대의견이 의미를 갖는 부분은 종래 대법원의 판례가 일관되게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 왔던 상황에서 이를 존중하여 합헌으로 결론을 낼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이 그것도 한정위헌이 아니라 단순위헌으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재판관님은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가지셨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실제로 좀 어떠신지요.

이동흡: (웃음) 이 부분도 다른 재판관님들과고는 의견이 상당히 달랐던 부분인데요. 대법원에서 일찍이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렇게 한정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을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법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양 기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것을 위헌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었죠. 그런데 이걸 제 혼자 반대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법원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너무 기관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 관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관습법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냐 아니냐가 큰 쟁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현재에서는 당연히 관습법은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다, 이렇게 판례가 확립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 교과서에도 적시했습니다만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존재가 확인되어야 관습법이 법규범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 사항이 있다든지 이러면 관습법으로 정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식을 다수의견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지 몰라도, 관습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원의 판례에서 존재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습법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독일에서는 이걸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법원하고 현재가 상충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상충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독일에서는 누가 하든지 같은 사법부라는 사고를 하는 게 아니냐는 추정을 해보는데, 양론이 가능한 한데 아무튼 제가 주장하는 의견도 가능한 게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신동호: 그 뒤에 제가 쪽 예시를 해놓은 사건들은 다 일일이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요.

이동흡: 예, 예.

신동호: 혹시 재판관님께서 특별히 기억에 새롭거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실 만한 게 있으면 추가로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흡: 오늘 중요한 것 많이 하셨으니까 넘어가셔도 안 되겠습니까.

신동호: 재판관님, 아까 사형제 주심을 맡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동흡: 그렇습니다.

신동호: 사형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뜨거운 주제고 국제적으로도 아주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이동흡: 예.

신동호: 주심을 맡아서 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라든가 일화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십시오.

이동흡: 사형제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판례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미국도 원래 사형제에 대해서 위헌이 됐다가 왔다갔다 하다가 합헌으로 확립이 됐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헌법에 사형이란 말이 나오니까.

신동호: 그렇죠, 예.

이동흡: 헌법에 사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사형제도가 있다는 전제하에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위헌이다 하는 거는 정말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좌우간 사형제에 대해서 논란은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완전히 합헌으로 해서 지금도 집행이 착착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제 위헌은, 유럽에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사형의 폐해 이런 데 대한 역사적인 잔재가 남아서 그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왔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형 집행하면 EU에서 무역 제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죠. 중국 같은 데는 수도 없이 사형을 집행하는데 한마디 안 하고 한국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적인 결정 문제지, 헌법을 만들 때 그런 헌법을 만드시든지... 그거는 국민 다수의 의견과 여론이 모아져야 될 건데, 사형의 위헌 문제에서 가장 큰 것은 오판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제가 주심을 해서 합헌으로 잘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9. 제4기 재판부의 특징

신동호: 4기 재판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4기 재판부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재판소의 구성, 심판의 절차, 평의 방식, 행정사무 등과 관련해서 4기 재판부의 특징적인 부분, 또 언급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흡: 제일 생각나는 게 주심 표시를 삭제한 것인데, 제가 연구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원재판부에서 주심을 표시한 나라가 없더라고요. 우리도 원래는 대법원도 그걸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도 중간에 어느 시절부터 표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연유를 뒷이야기로 들으니까 대법원은 소부에서 많이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 사람, 네 사람이 있는데 주심 대법관이 잘못해서 판결이 잘못되는 게 있으면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안 드러난다는 거지요. 뒷이야기이지만 1기 재판부에서는 원래 주심 표시가 없었는데 2기 재판부 들어오면서 대법원에서 수입이 돼서 우리가 그 표시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심이 다 하는 것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됐어요. 원래 헌법재판에서 주심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막 주동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심을 드러내는 것이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의제로 올렸더니,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도 하고 해서, 역시 이걸 삭제하는 게 맞다고 해서 다행히

우리 4기 때부터 없어지게 됐죠.

신동호: 그렇죠. 4기 처음에는 표시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동흡: 어느 시간이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 된 것 같고요. 옛날에는 주심이 너무 준비하고 주심이 아닌 분들은 덜 하고 들어가서 재판하는 예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4기 재판부에서는 비주심인 경우도 미리 검토를 해서 자기 의견도 쟁점을 밝혀서 메모한 자료를 사전에 배부도 하고 그걸 갖고 토론하는 식으로 발전이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속연구관제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때 한 재판관님한테 세 명이다가 네 명이 됐습니까? 내 기억에는 3, 4명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게 잘 하다가 한 1, 2년 지냈나? 소장이 이 연구관제도를 확 바꿔버렸어요. 전속연구관을 재판관당 한 명만 딱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공동조로 해서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전속연구관은 헌법소원 사전심사, 그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심이 아니라도 의견도 내야 하잖아요. 사전 심사하는 연구관 한 사람 데리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연구관 불러서 일 시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소속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잘못된 제도 변경이었어요. 사전에 재판관들한테 양해도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재판관님들이 상당히 불만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5기 재판부가 되면서 싹 원상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판관 중심의 재판이 돼야 하는데 너무 연구관 중심이라든지 소장 중심의 재판소 운영, 이런 거는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동호: 4기 재판부가 다룬 사건을 보면 6년 동안 8823건의 사건을 처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이 203건, 단순위헌 155건, 헌법불합치 48건, 그리고 법률 조항 170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됐습니다. 4기 재판부가 다룬 사건과 내린 결정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동흡: 그 어떤...

신동호: 3기나 5기 재판부와 다른 4기 재판부의 두드러진 특징이랄까요.

이동흡: 그런 분야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4기 재판부가 위헌 선언 양이 더 많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 조사해 보셨으면 알겠네.

신동호: 네, 4기 재판부가 특별히 많은 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이동흡: 많은 건 아니고. 그런데 사회권 관련 사건들이 많았다는 평가는 하는 같아요. 그런 것 같고, 특별한 특징은 잘 (웃음) 모르겠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SNS 선거운동 사건처럼 2년 지나 결론을 바꾸는 결정을 한 것은 헌

법재판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나 생각해요. 헌법재판이라는 건 법 안정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결정을 한번 하면 최소한 10년은 가야지 그 재판관 임기 내에 결정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외국에서는 있기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신동호: 시대 변화에 맞게 법도 여러 가지 달리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법의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이동흡: 그렇죠, 예.

신동호: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쉬운 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고 2011년에 조대현 재판관 퇴임 후에 1년 2개월 동안 아주 장기간 8인 체제로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이동흡: 예.

신동호: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도 번번이 반복이 됐고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동흡: 헌법재판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재판관 임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부작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조대현 재판관 공백 사태도 그렇고 진효숙 재판관 소장 사태부터 서로 복수하듯이 공방을 주고받기를 계속해서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죠.

10. 헌법재판소의 국내외 위상

신동호: 4기 재판부는 또 하나의 특징이 헌법재판소가 국내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랄까 이런 게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님께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언급하셨는데, 지금 정리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요.

이동흡: 언론에서 국민 신뢰가 높은 기관이라고 해서 늘 발표하는 걸 보면 좌우간 다행스럽게도 현재가 국가기관 중에는 아주 최상위 평가도 받고 해서 우리가 재판소에 있을 때 상당히 자부심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는데 선생님, 변화가 있었습니까?

신동호: 저도 그 뒤로 신뢰도 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걸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동흡: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활발하게 아재연합 창설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교류도 하고 해서 아시아에서는 최고 헌법재판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 준비를 하시면서 세계 각국 헌법재판소도 방문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의 국제적 흐름이라든가 현안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헌법재판을 소개도 많이 하시고 강연도 하셨는데, 우선 중국 인민대학 법학원 초청을 받아 예정에도 없이 중국어로 강연을...

이동흡: 예정에 있었죠. (웃음)

신동호: 원래 강의를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이동흡: 강연 내용은 우리말로 준비된 것을 조선족 교수가 중국말로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쪽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중국말로 써놓은 걸 중국말로 읽을 수는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강연을 중국말로 했어요. 그래야 전달이 학생들한테 많이 되니까요. 그때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강당에 모여 있었고, 질의응답부터는 통역을 했죠. 중국 사람들도 한국 헌법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됐죠.

신동호: 강연 제목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공헌’이었잖습니까.

이동흡: 그렇습니다.

신동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헌법재판소 관련 자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루어졌지만 그걸 다진 것은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많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강연한 내용을 포함해서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흡: 그 강연 내용이 (면담자가 갖고 있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을 가리키며) 이 책에 그대로 원고가 다 들어 있죠. 좌우간 한국의 헌법재판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발전해 왔다고 구체적 사례도 들면서 강연을 했죠.

신동호: 그때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이동흡: 아, 그렇죠. 마치고 나서,

신동호: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게 안 나와서요.

이동흡: (웃음) 아, 그래요? 내가 기억을 다 하겠습니까.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까.

신동호: 이를테면 한국은 성문헌법을 갖고 있는데 관습헌법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까 조금 말씀을 하셨고.

이동흡: 아니, 아니. 그 문제 아니고 관습헌법 문제죠. 아까는 관습법 문제였고요. 관습법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이고, 관습헌법 이것은 행정수도 이전 현재 판결 그겁니다.

신동호: 그런 것도 있었고,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고 위헌 법률 심사권은 헌재가 가지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동흡: 예, 그런 질문이 있었죠.

신동호: 그다음에 헌재가 한 변형결정을 법원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동흡: 예, 예.

신동호: 헌재가 국가기관 중 서열은 몇 번째냐.

이동흡: 예.

신동호: 그다음에 영상물등급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기관이고, 감독이 어떠한 영화를 제작 하더라도 상영할 수 있느냐.

이동흡: 예, 예.

신동호: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이 어떠하냐, 간통제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노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이니까 기각한 것은 아니냐, 법학 교수가 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위헌 법률심사제도나 헌법재판소 제도는 서방에서 발달한 제도인데 동방에 위치한 한국에서 어떻게 정착되어 발전할 수 있었느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로비에 있는 조각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동흡: 예, 그런 질문까지 다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법학원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보고 간 거예요.

신동호: 이 질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답변을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흡: (웃음) 아니 그거는 그 질문 자체에 답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는 거지. 어떻게 명령 규칙은 대법원이 판단하면서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마찰이 안 생기느냐, 그런 걸 중국 학생들이 깊이 있게 잘 질문하는 것을 보면 수준이 상당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신동호: 중국 말고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하셨지 않습니까.

이동흡: 예, 그중에 좀 인상적인 게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하는데 독일 아데나워재단에서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 각국에 헌법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베트남 경우는 베트남 국회에서 헌법 제도에 대해서 국제세미나를 하는데 일부러 아데나워재단에서 저를 초청 인사로 해서 강의하고 질문하게 하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왜 한국은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가 있으면 헌법소원을 하는데 공권력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재판인데 왜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되느냐,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또 홍콩시립대학 법대 학장이 우리 여기(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가 내가 인민대학 갔다 온 것 알고, “우리 대학에도 한번 와서 강연해 주십시오”라며 초청해서 그것은 영어로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때도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가 제가 그 책을 두 권으로 나눠서 각국 방문해서 발표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기회 있으시면 미국 부분은 꼭 한번 보세요. 미국 부분은 변론 상황이라든지 대법원장 만났던 이야기 이런 걸 자세하게 묘사해 봤으니까요. 법리적으로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 많이 나옵니다.

11. 헌법재판제도

신동호: 예. 지금도 <헌법소송법> 개정판을 내시잖습니까.

이동흡: 예.

신동호: 여전히 헌법재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헌법소송의 전문가로서 우리 헌법재판 제도의 문제점과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흡: 뭐 워낙 우리 뒤에 후임 재판관님도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재판을 잘해 주십니다. 5기, 6기 보면 역시 선배들보다 후배들이 더 뛰어나요. 그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장기 과제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 그런 걸 말씀드리면 우리 재판관 임

기가 6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런 의견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보통 8년 내지 10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헌법 개정 사항이지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고요.

신동호: 9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동흡: 예. 그러니까 10년도 있고 9년도 있고 8년도 있습니다. 독일은 8년?, 타이나 다른 나라 보면 10년. 그다음에 공개변론을 지금 매달 한 번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도 있을 때 공개변론을 하려고 하면 한 6개월 전에 뭘 할 건지 골라서 준비해야 하니까 진짜 쉬운 부분은 아닌데, 미국은 보니까 공개변론을 1년에 100건을 하거든요. 원래 공개변론하는 것만 옳은 재판을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도 하지만 100건을 골라서 하는데 공개변론 일정이 짝 나오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공개변론은 건수를 확대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잔잔한 것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공개변론으로 법리를 따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 과제로 생각하는 게 재판소원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예요. 이 부분도 상당히 고심을 했으면 합니다. 독일은 어떻게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과 함께, 만약 재판소원을 도입해서 많은 사건이 몰려오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독일은 보니까 90%를 다 사전심사해서 각하하고 일부만 갖고 헌법 판단하는 걸로 설명을 하던데, 그런 문제는 장기 과제로 연구를 계속해야 할 부분이죠. 그다음에 선거소송 부분이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에서 선거소송은 보통 헌법재판소에서 맡는데 우리는 대법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전통적으로 그걸 다 하던 거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후발 기관으로 그런 걸 갖고 오기가 좀 어려웠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과연 국가적으로 봐서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대법원이 너무 일이 많고 한테 오히려 선거소송은 헌법재판하고 더 성질이 유사한 것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판관 중심의 헌법재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 중 하나가 연구관 선발하고 배치하는 것이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재판관은 전혀 연구관 선발이나 배치에 관여하는 바 없고, 재판소에서 배정해주면 무조건 받는 거지요. 그런데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는 선발 자체를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이 사람 쓸 만하다고 하면 연구관으로 배정받아 보조를 하도록 하는데 그런 선진국 사례 같은 걸 보고 우리도 그런 게 가능한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신동호: 지금은 연구관 인사를 대법원에서 합니까.

이동흡: 아니죠. 법원에서 오는 파견 관사는 대법원에서 하고, 파견되는 검사도 있고 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 연구관도 있고요. 자체 연구관을 어떻게 배정할 건지 이런 것도 좌우간 소장이 전권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법원과의 대립 관계 이런 게 자꾸 있으니까 법원 파견 연구관은 줄이고 자체 연구관을 들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상당히 있기도 한데 과연 파견 연구관을 다 없애고 자체 연구관으로 하는 게 옳은 길이나,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가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 정도입니다.

12. 퇴임하실 때의 소감 및 헌법재판관 시절에 대한 회고

신동호: 헌법재판관으로 계신 6년이 재판관님의 전체 법조 인생에서 굉장히 특별한 시기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의미도 굉장히 특별하지 않나 싶은데요. 퇴임사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아재연합 헌장을 채택하고 건국 이래 최초의 사법국제기구를 발족시키는 데 일조한 것을 보람으로 언급하셨습니다. 퇴임하시면서 소감을 지금 시점에서 회고해 볼 때 어떠신지요.

이동흡: 예, 제가 전부 한 30 몇 년 됩니까?

신동호: 예, 34년.

이동흡: 그런데 판사로 있을 때와 재판관 6년이 특별히 달랐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재판관으로 6년이 아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도 더 들고 해서 그런지 아무튼 재판관 가면 판사나 고등법원 부장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별로 편한 건 못 느꼈고, 그리고 여기는 재판관님들끼리 치열한 논쟁도 해야 하고 의견을 다 내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쉽지 않았던 6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호: 그때 대법관 물망에도 오르셨는데 어쨌든 또 대법관으로 가서서도 6년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가정을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헌법재판관으로서 6년이 더 보람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동흡: 그렇게 비교는 할 수 없고요. 일이 완전히 다르니까. 대법관으로 가서 사건 처리하는데 더 힘들었겠죠. 보람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도 조금도 아쉬운 건 없고 다만 대법관 갔으면 마치고 나서 변호사 활동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안 됐겠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이제 보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별로 사건도 없고 한테 그래도 찾아오는 건 헌법 관련되는 탄핵이라든지 헌법소원 이런 게 오더만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일반 사건도 좀 할 수 있을 건데 오질 않아요.

신동호: 헌법 관련된 소송은 최고 전문가시니까...

이동흡: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웃음)

신동호: 요즘은 헌법 관련된 소송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동흡: 그런데 워낙 사건 수가 적죠. 일반 사건과는 상대가 안 되죠.

1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입법부 간의 관계 설정

신동호: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또 헌법재판소와 입법부 이런 다른 기관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우선 입법부와의 관계를 언급하시기 전에 대법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도 있는데 특별히 평소에 재판관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흡: 원래 헌법재판소가 후발 기관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2공화국 장면 정권 때 생기려다가 그냥 미수에 그치고 헌법위원회 이런 제도로 있다가 헌법재판소가 1987년에 새로 만들어졌으니까요. 미리 자리 잡고 있던 법원,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난데없이 뒤에 생긴 기관이 자꾸 이렇게 권한을 갖고 가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냐, 이런 입장에서 항상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지 기관 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걸 극복을 해야만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헌재를 비판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도 너무 헌재의 권한을 지키려고 좀 무리를 한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대법원은 자기들 권한을 자꾸 헌재가 빼앗아가나 늘 너무 걱정하고 견제를 하니까 마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같은 사법기관이니까 잘 협조를 해서 제도를 더 발전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동호: 그다음에 입법부와의 관계인데 사실 헌법재판은 입법자가 만든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가 더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입법부와의 관계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님의 진단과 향후 적절한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동흡: 아니 그래서 저도 재판관 있을 때 그렇게 느꼈는데 국회의 만든 법률을 헌재가 위헌 선언을 하니까 위헌 선언하는 걸 국회에서 싫어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

게 국회의원들 국정감사 가고 청문회 할 때도 보면 오히려 합헌 의견 낸 걸 막 공박을 하고 위헌 선언을... (웃음) 그런 면에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잘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동호: 그러니까 국회에서 총대를 메기 어려운 걸 헌재가 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동흡: 아, 그러네요. 예.

신동호: 호주제 폐지라든가 간통죄, 이런 것들은 자기들 표하고도 직결되는데 헌재가 그걸 재단을 해주니까... (웃음)

이동흡: 아, 그렇네요. (웃음)

신동호: 그래서 재판관님도 강연에서 지적하셨듯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헌법재판소가 한 공헌이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 거죠.

이동흡: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셨네요.

14.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

신동호: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언이나 헌법재판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점, 보완할 점 그리고 미래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조언이나 당부의 말씀, 이런 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쭙보지 못했던 부분에서 혹시 생각나서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덧붙여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흡: 아까 워낙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재판 제도에서 개선 보완할 점으로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 언급했지만 재판관 중심의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선진국 사례를 봐서 그렇게 보완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미래 재판관님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 재판관 임명되면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 이 부분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재판을 하시면 더 좋은 재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외국 사례를 접하다 보니까 퇴직 재판관에 대한 배려 부분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법원 같은 데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시니어 재판관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신동호: 앞에 제가 여쭙본 재능기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동흡: 예.

신동호: 그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동흡: 아닙니다. 그때 박한철 소장이 지역상담제도를 전국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헌법소원 상담하면서 설명해주고 그걸 제가 한 2년 봉사를 했죠. 그때 상당히 새로운 정보 같은 것도 듣고 했는데, 지금 폐지됐죠? 이제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럴 거야.

신동호: 장시간 동안 말씀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써 이동흡 재판관님에 대한 구술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흡: 감사합니다.